# 서울서부지방법원

판 결

사건 2023고단822 업무상횡령

피고인 A

검사 홍준기(기소), 박성원(공판)

판결선고 2023.6.22.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이 유

### 범죄사실

피고인은 2022. 1. 17.경부터 2022. 4. 26.경까지 피해자 B이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D, 'E' 및 'F'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대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.

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계좌에 C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, 2022. 4. 22. 12:40경 그 중 600만 원을, 같은 날 12:41경 600만 원을, 2022. 4. 23. 07:44경 600만 원을, 같은 날 07:45경 267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(계좌번호 2 생략)로 이체하여 합계 2,067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.

### 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H,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
- 1. 민간도급계약서, 각 계좌거래내역,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

## 법령의 적용

-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, 제355조 제1항, 징역형 선택
- 1. 집행유예

형법 제62조 제1항

#### 양형의 이유

- 1.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: 징역 1개월~10년 이하
- 2.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

[유형의 결정] 횡령·배임범죄 > 01. 횡령·배임 > [제1유형] 1억 원 미만 [특별양형인자] 감경요소: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(공탁 포함) [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] 감경영역, 징역 1개월~10개월

#### 3. 선고형의 결정

피고인이 피해자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관리 및 보관하던 중 임의로 공사대금을 이체하였고, 그 횡령액이 약 2,0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,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.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, 피고인이 위 공사 완료 후 피해자와의 정산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자신의 수익금을 위 공사 진행중 위 공사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피해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이 받아야 할 돈을 임의로 계산하여 이를 선지급 받고자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,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,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,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,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, 성행, 환경,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윤양지